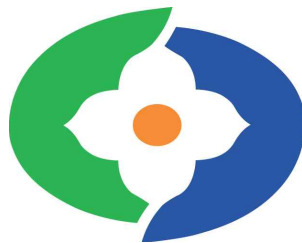


종합감사 등 반복 지적사항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담 당 관)

- 종합감사 등 반복 지적사항 - 특정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9. 6. 17. ~ 7. 5.
- 감사대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사용 공사
- 대상부서 : 전 부서
- 감사 반 : 기획감사담당관 외 2명
- 감사범위 : 2016년 4월 ~ 2019년 5월
- 감사중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에 따른 매월 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의 인건비 사용 내역 비교 후 중복 계산여부 확인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2건
 - 행정상 조치 : 12건 (주의 -건, 시정 12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121,898천원/ 감액 11,547천원
 - 신분상 조치 : 없음

주요 지적사항

연번	과소명	지 적 사 항	처분			공사건수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시정 12		회수 121,898천원	29건
					감액 11,547천원	5건
1	주민복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시정	-	회수 3,401천원	1건
2	경제과		시정	-	회수 4,908천원	2건
3	농정과		시정	-	회수 3,895천원	2건
4	환경과		시정	-	회수 4,629천원	1건
					감액 1,961천원	2건
5	산림과		시정	-	회수 2,531천원	3건
6	건설교통과		시정	-	회수 24,630천원	6건
7	안전관리과		시정	-	회수 8,977천원	5건
					감액 9,012천원	2건
8	도시건축과		시정	-	회수 45,722천원	2건
9	보건소		시정	-	회수 943천원	1건
10	상수도사업소		시정	-	회수 14,545천원	3건
11	시설사업소	시정	-	회수 4,932천원	2건	
12	힐링사업소	시정	-	회수 2,785천원	1건	
				감액 574천원	1건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주민복지과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3,401,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일 일 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1건)							3,401	
☆☆면 ☆☆☆☆☆☆ 신축공사	577,864	(주)☆☆ ☆☆☆☆ ○○○○	17.09.04 17.09.11 18.04.1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1	2,506	3,334	회수
				환경 보전비	2	50	67	회수

【위법 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민복지과에서는 「☆☆면 ☆☆☆☆☆☆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3,401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34천원, 환경보전비 67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1건의 3,401,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경제과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4,908,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2건)							4,908	
☆☆☆☆☆☆ ☆☆시설 정비공사	208,751	★★★★ 건설(주) ○○○	16.08.01 16.08.04 16.11.01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	3512	465	회수
				환경 보전비	9	1,499	1989	회수
☆☆☆☆☆☆ ☆☆시설 부지조성공사	544,485	(주)★★★★ ○○○	17.10.18 17.10.23 18.05.22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1	1,843	2,454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경제과에서는 「☆☆☆☆☆☆ ☆☆☆시설 정비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4,908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19천원, 환경보전비 1,989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2건의 4,908,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농정과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3,895,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2건)							3,895	
☆☆☆☆공동 ☆☆☆☆센터 기능보강사업	260,327	★★건설(주) ○○○	18.08.20 18.08.27 18.11.2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	1,120	1,501	회수
영동군 ☆☆☆☆☆☆ 시설 신축공사	423,010	★★건설(주) ○○○	18.12.11 18.12.13 19.05.1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8	1,785	2,394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정과에서는 「☆☆☆☆ 공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3,895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95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2건의 3,895,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환경과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4,629,000원, 감액 1,961,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3건)							6,590	
☆☆ 공공하수처리 시설설치공사 (1차분)	397,000	☆☆☆☆ 건설(주) ○○○	18.01.18 18.02.01 19.05.30	환경보전비	6.3	805	1,077	감액
▲▲ 공공하수처리 시설설치공사 (1차분)	782,760	☆☆건설(주) ○○○	18.03.20 18.03.27 18.12.18	환경보전비	10.5	660	884	감액
☆☆☆☆복지 회관 건립사업	745,442	☆☆☆☆ 개발(주) ○○○	18.03.28 18.04.02 18.10.01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4	2,685	3,475	회수
				환경보전비	5	892	1,154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환경과에서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1차분)」 외 2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6,590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75천원, 환경보전비 3,115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3건의 6,590,000원(회수 4,629,000원, 감액 1,961,000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산림과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2,531,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3건)							2,531	
201☆☆ ☆☆☆☆ 신설사업	97,600	(주)☆☆☆☆ 병원 ◎◎◎	16.04.07 16.04.12 16.04.27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	425	569	회수
201★ ★★★★ 신설사업 (★★지구)	135,550	(주)☆ ◎◎◎	17.03.28 17.03.30 17.06.17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	315	423	회수
☆☆☆☆☆ ☆☆창고 설치사업	154,660	☆☆건설(주) ◎◎◎	17.06.22 17.06.27 19.04.15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0	1,200	1,539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산림과에서는 「201☆년 ☆☆☆☆ 신설사업」 외 2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2,531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31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3건의 2,531,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건설교통과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24,630,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도금액 (천원)	도급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6건)							24,630	
☆☆도로확 포장공사 (2차분)	377,166	☆☆건설(주) ○○○	16.12.07 16.12.08 17.06.16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1	4,738	6,339	회수
☆☆☆호선(☆ ☆☆☆☆) 수해복구공사	369,854	☆☆종합 건설(주) ○○○	17.03.15 17.03.20 17.09.1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7	688	922	회수
				환경 보전비	18	1,710	2,354	회수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149,630	(주)☆☆종합 건설 ○○○	16.12.30 17.01.13 17.05.28	환경 보전비	7.7	841	1,121	회수
☆☆지구 ☆☆ 정비사업	756,710	(주)☆☆토건 ○○○	17.09.25 17.10.10 18.10.0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8	5,800	7,777	회수
				환경 보전비	12	1,800	2,413	회수
☆☆지구 ☆☆시설 개보수사업	410,068	☆☆건설(주) ○○○	17.10.23 17.10.30 18.07.17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0.2	1,155	1,539	회수
★★지구 ★★시설 개보수사업	189,593	☆☆☆☆ 개발(주) ○○○	16.12.06 16.12.09 17.06.15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	1,384	1,845	회수
				환경 보전비	4	240	320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2차분)」의 5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24,630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422천원, 환경보전비 6,208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6건의 24,630,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안전관리과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8,977,000원, 감액 9,012,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7건)							17,989	
☆☆소하천 정비사업	40,817	(주)**건설 ○○○	16.04.07 16.04.12 16.06.2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	300	402	회수
★★소하천 정비사업	1,437,929	(주)**** ○○○	16.03.29 16.04.01 17.11.21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8	446	599	회수
				환경보전비	29	3,282	4,401	회수
▲▲소하천 정비사업	799,300	(주)**종합 건설 ○○○	17.04.24 17.04.27 18.10.1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	702	942	회수
○○소하천 정비사업(1차)	117,710	**건설(주) ○○○	17.04.25 17.04.27 17.10.23	환경보전비	9	599	799	감액
△△소하천 정비사업	130,662	**종합 건설(주) ○○○	18.01.08 18.01.11 18.06.2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	492	659	회수
○○소하천 정비사업(2차)	459,468	**건설(주) ○○○	18.02.08 18.02.19 18.12.15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8	6,163	8,213	감액
☼☼☼☼ 소하천 정비사업	113,238	**건설(주) ○○○	18.08.16 18.08.21 18.12.17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0	1,481	1,974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안전관리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의 6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17,989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89천원, 환경보전비 5,200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7건의 공사에 대해 17,989,000원(회수 8,977,000원, 감액 9,012,000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도시건축과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45,722,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2건)							45,722	
☆☆교 (소로☆☆-☆☆) 재가설공사	600,840	(주)☆☆건설 ○○○	16.11.22 16.11.29 17.11.06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9	4,472	5,960	회수
				환경 보전비	35	1,164	1,553	회수
☆☆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2,540,000	(주)☆☆건설 ○○○	15.12.11 15.12.17 16.09.19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62	21,150	28,226	회수
				환경 보전비	71	7,480	9,983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도시건축과에서는 「☆☆교(소로 ☆-☆☆) 재가설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45,722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186천원, 환경보전비 11,536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2건의 45,722,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보건소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943,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1건)							943	
☆☆☆☆센터 설치(☆☆☆ 중축) 공사	450,879	☆☆건설주 ○○○○	18.06.15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	600	770	회수
			18.06.18 18.11.14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보건소에서는 「☆☆☆☆센터 설치(☆☆☆ 증축)공사」 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943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0천원, 환경보전비 173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1건의 943,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14,545,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3건)							14,545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288,460	☆☆개발(주) ○○○	17.02.14 17.02.20 17.08.1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91	8,296	11,122	회수
				환경 보전비	11	892	1,195	회수
★★★리 농어촌생활용 수개발사업	107,021	(주)★★건설 ○○○	18.09.14 18.09.19 18.12.17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5	659	873	회수
▲▲▲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90,980	▲▲▲건설(주) ○○○	18.11.12 18.11.14 19.05.17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7	1,028	1,355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상수도사업소에서는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14,545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50천원, 환경보전비 1,195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3건의 14,545,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시설사업소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4,932,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2건)							4,932	
201☆년 ☆☆리 ☆☆공원 ☆☆보완공사	329,808	☆☆건설(주) ○○○	16.04.22 16.04.27 16.07.0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	800	1,072	회수
영동★★★★ ★★장 조성사업	369,509	(주)★★종합 건설 ○○○	17.04.10 17.04.17 17.08.1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0	2,995	3,860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설사업소에서는 「201☆년 ☆☆리 ☆☆공원 ☆☆보완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4,932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32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2건의 4,932,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부서】 영동군 힐링사업소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2,785,000원, 감액 574,000원

【신분상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인건비 정산 소홀

【현 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구분	중복 일수	중복 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계(2건)							3,359	
영동☆☆☆ 단지 조성사업(1차)	3,136,045	주☆☆ ○○○	17.02.23 17.03.02 18.10.2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	220	287	감액
				환경보전비	2	220	287	감액
★★★★ ★★공원 ★★장 조성사업	331,649	주★★건설 ○○○	18.08.17 18.08.22 18.12.19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7	1,827	2,449	회수
				환경보전비	2	250	336	회수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힐링사업소에서는 「영동 ☆☆☆단지 조성사업(1차)」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3,359천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36천원, 환경보전비 623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과다 지급한 공사 2건에 대해 3,359,000원(회수 2,785,000원 감액 574,000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